

Tokyo Electron Group

뇌물수수 · 공여 및 부패 방지에
관한 기본 방침

목차

<u>뇌물수수·공여 및 부패방지에 관한 기본 방침에 관해</u>	2
1. <u>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의 금지</u>	3
2. <u>상업적 뇌물의 금지</u>	3
3. <u>뇌물수수의 금지</u>	4
4. <u>부정회계의 금지</u>	4
5. <u>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절차</u>	4
6. <u>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추진을 위한 조직</u>	4

뇌물수수·공여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해

목적

글로벌 기업으로서 Tokyo Electron Limited 및 그 자회사(이하 “TEL 그룹” 또는 “회사”라 함)는 미국의 해외부패행위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라 함)), 영국의 뇌물수수·공여법(Bribery Act),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1988년 인도 부패방지법 (the India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88)과 그 외 국가의 법률을 포함하여 뇌물수수·공여 및 부패행위 방지에 관해 적용되는 법률 일체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이러한 뇌물수수·공여 및 부패 방지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본 방침”이라 함)은 TEL 그룹의 종업원이 뇌물수수·공여방지 및 부패행위 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Tokyo Electron Group의 윤리 기준을 보강한 방침입니다.

본 방침의 적용 대상자

본 방침은 TEL 그룹의 임원(이사 및 감사를 포함), Corporate Officer, Executive Officer, TEL 그룹의 자회사와 노동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TEL 그룹의 사업체의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TEL 그룹의 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정사원, 계약사원, 고문, 컨설턴트, 독립 업무 도급인, 위탁자, 정년 재고용자, 파트타이머, 일용직 혹은 계절마다 고용되는 노동자) 및 타기업에서 파견된 자나 파견 노동자 등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직원”이라 총칭함)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제보 및 사내 조사에 대한 협력

임직원은 본 방침에 위반된 사실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뇌물수수·공여, 부정회계 또는 절차 위반을 인지한 경우(회사가 기용한 제3자가 뇌물을 공여한 의심이 드는 경우도 포함)에는 신속히 법무(컴플라이언스)에 제보해야 합니다. 또한, 고의로 허위 주장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를 통해 근거가 없다고 판명한 경우에도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의심되는 행위를 성실히 제보한 사람이나 조사에 협력한 사람에게 보복 또는 보복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신고창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보복 및 보복성 행위는 징계사유가 됩니다.

임직원은 국내 및 국외를 불문하고 회사가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표기함)를 대상으로 그 공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제 3 자를 매개하는 것을 의미함) 아래에서 규정하는 금전과 그 외 이익 일체(이하, “뇌물”이라 표기함)를 공여 시도, 공여, 제안, 약속하거나 또는 이들 행위를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관계자에 대해 동기부여를 했다고 하는 의심만으로도 뇌물수수·공여가 행해졌다고 신고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 공무원: 정부의 임직원 또는 공무의 대가로 봉급이나 위탁비 등의 보수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자(경찰관, 소방관, 군인, 세무관, 세관검사관, 선거관리자, 정부가 설립했거나 정부로부터 자금을 제공받는 법인 및 기관의 직원, 공립대학의 대학 부총장 및 교수 등을 포함), 정부부처, 지방 공공단체, 정부관련 기업이나 정부관련 법인, 공적인 국제 기관(예: 국제연합, 세계은행, 국제 적십자, 국제 올림픽 위원회), 법관(재판 기능의 권한을 가진 자 포함), 중재인, 공공서비스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정당의 임직원, 공직 후보자, 이들을 대행해 공무를 집행하는 자
- 뇌물: 현금 및 현금에 상응하는 물품뿐 아니라, 정부의 임직원, 그 가족 또는 관계자에 대한 선물, 여행, 접대, 할인, 연수 및 고용, 작위, 부작위, 고용 또는 인턴십의 제안을 포함한 호의, 금전 및 그 외 가치 있는 것(정부 임직원 또는 그 가족, 또는 그 관련자가 제휴 또는 지원하고 있는 정당 또는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의 제공
 - * ※”현금”에는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수속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한 일명 급행료 등 소액의 지불도 포함합니다.
- 선물: 자사 로고가 들어간 펜 등의 저가 판매품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사내규정이나 관련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절 관련 선물(예: 크리스마스 또는 신년 선물) 및 의례적인 선물(예: 지역 특산품) 을 포함하며, 그 가치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함.

접대: 회사규정이나 관련 법률에서 금지된 식사(조식, 중식, 석식) 제공, 스포츠 경기나 음악·쇼 이벤트 등의 이벤트 초대.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성인 오락이나 도박이 이뤄지는 부적절한 장소에서 공무원을 접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임직원은 회사의 사업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 이외의 제 3 자(이하, “민간인”이라 함. 예: 고객이나 공급자)에게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업무상의 이익 등(편의 제공을 포함)을 얻기 위해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해당 제 3 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제 3 자를 매개하는 것을 의미함) 뇌물을 공여, 공여 시도, 신청, 약속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3

뇌물수수의 금지

TEL 그룹의 임직원은 국내 및 국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직무에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령 또는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자로부터의 뇌물은 때로는 과잉 접대나 선물 형식으로 위장 될 수 있습니다.

4

부정회계의 금지

임직원은 본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상세하고 정확하며, 모든 거래와 회사 자산의 처분 실태를 상세히 반영하는 회계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5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절차

임직원은 회사의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본 방침 별지의 가이드 라인 및 사내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공무원 또는 제 3 자를 접대·선물·초빙하거나 또는 받은 경우
2. 기부(지역사회에 대한 기부, 정치 기부금, 자선 기부 등)하는 경우
3. 특정 제 3 자를 고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4.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

6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추진을 위한 조직

- **Tokyo Electron Limited** (이하, “본사”라 표기)는 부패행위 방지 규정 준수를 위한 방침을 결정하고 본 방침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정 및 폐지를 실시하여 TEL 그룹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사의 법무·컴플라이언스부서는 치프 컴플라이언스 오피서(**Chief of Compliance Officer**)의 지휘 아래서 위험성 평가, 정기적 연수, 상담 접수, 부정 조사를 실시하여 TEL 그룹의 각 자회사가 본 방침 준수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사의 내부 감사 부서(감사 센터)는 본 방침의 준수 상황에 대해 내부 감사 방침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TEL** 그룹 각 자회사의 경우, 본사의 치프 컴플라이언스 오피서가 지역 컴플라이언스 헤드(**Regional Compliance Head**)또는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이하, “각 사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라 표기함)를 지정하여 본 방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 2020년 7월15일

개정: 2025년 8월1일

발행원: Tokyo Electron Limited